

기간(7.1~12.31)중에 승계취득으로 인한 일할계산 과세시 승계취득자가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연세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2회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6을 개정하였다.

<법 제196조의6 >

①自動車稅는 1臺當 年稅額을 2分の1의 金額으로 分割한 稅額(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各 期分稅額)을 다음 各 期間내에 그 納期가 있는 달의 1日 현재의 自動車 所有者로부터 自動車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郡에서 徵收한다. 다만, 納稅義務者가 年稅額을 4分の1의 金額(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는 各 期分稅額의 2分の1의 金額)으로 分割하여 납부하고자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1期分 稅額의 2分の1은 3月 16日부터 3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第2期分 稅額의 2分の1은 9月 16日부터 9月 30日까지 기간중에 각각 分割하여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郡에서 納期중에 徵收할 稅額은 이미 分割하여 徵收한 稅額을 공제한 金額으로 한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자동차세의 과세기본원칙인 연세액⁴⁾ 제도를 유지하면서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6 규정에 따라 각 기분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승계취득에 따른 합리적인 일할계산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서는 자동차세 차등과세 제도가 2001.7.1부터 시행됨을 감안하여 2001년도의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 제2기분의 경우는 연세액의 2분의1이 아닌 기별 자동차세 산출공식에 차령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2001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제2기분 세액은 경감된 세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4)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시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196조의5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면 되나, 연세액 일시납부후 승계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제19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 과세하여야 한다.